

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상시모집공고

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소공인 해외매장 입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본사업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해외(베트남) 오프라인매장 개점·운영을 통해 상품홍보 및 인지도 제고, 수익창출 등 우수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필요

나. 지원규모 : H/B*제조 소공인 추가모집 100개사 내외

* 뷰티제품군 : 스킨케어, 마스크팩, 클렌징, 선크림, 메이크업, 미용소품, 더모코스메틱, 헤어케어, 바디케어, 향수 및 디퓨저, 네일제품류

** 헬스&푸드군 : 건강식품(비타민, 영양제 등), 푸드(이너뷰티/식단관리 등), 구강용품

다. 사업기간 : 12월까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본 사업에 기 선정된 업체 신청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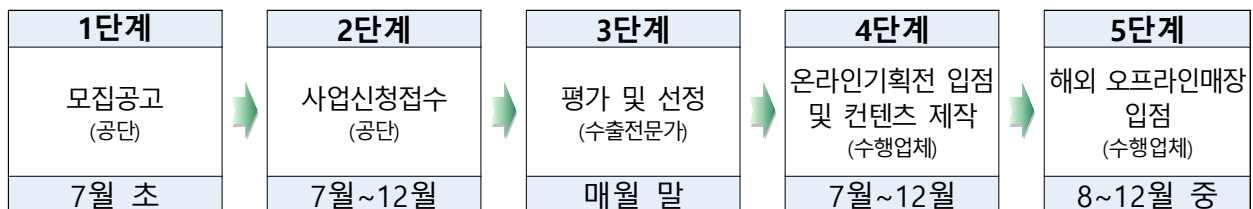
* 접수처 : <https://www.sbiz24.kr>

마. 지원내용 : 베트남 내 오프라인 매장입점, e커머스(틱톡, 쇼피) 내 소공인 기획전 입점, 콘텐츠 제작, 물류서비스, 라이브커머스, 홍보, 기타지원 등

< 세부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대상
오프라인 매장입점	· 베트남 내 오프라인 매장입점 및 판촉지원, 제품 홍보 등 * 선정기업 중 소공인 전용기획전 매출액 1~50위에 한함	매달 기획전 매출액 1~50위
e커머스 기획전 입점	· 틱톡 또는 쇼피 내 소공인특별기획전 개최 및 입점, 판촉지원, 마케팅 등	선정사 전체
콘텐츠 제작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번역, 홍보영상제작 등 * 단 홍보영상의 경우 소공인 전용기획전 매출액 1~10위에 한함	
기타지원	· 라이브커머스, 통관, 물류서비스,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CS관리 등)	

바. 추진절차 및 일정(안)



2. 세부지원내용

가. 오프라인 매장(50개사 내외)

- (오프라인 매장입점) 베트남 현지 소공인 전용 오프라인 매장 입점, 프로모션, 홍보 및 마케팅, 판촉지원 등
 - * 매장입점 기준 : e커머스(틱톡, 쇼피 등) 內 소공인 전용기획전 개최 후 기획전 매출액 상위 50개사 입점(월별 매출결과를 토대로 입점업체 변동)
- (홍보) 입점제품 및 입점사와 베트남 현지 인플루언서 매칭을 통해 주기적 라이브방송 진행(우수기업의 경우 탑급 인플루언서와 매칭)

나. 온라인 기획전(200개사 내외)

- (기획전 입점) e커머스(쇼피 및 틱톡) 內 소공인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마케팅 및 판촉지원, 이벤트 등
- (마케팅) 키워드 및 배너광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광고, 틱톡챌린지 진행 등
- (판촉지원) 판매활성화를 위한 쿠폰 지원 등

다. 콘텐츠 제작(200개사 내외)

- (콘텐츠)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최적화, 상품번역, 그 외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리플릿, 포스터, 홍보영상 등) 제작
 - * 단,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영상 등)의 경우 기획전 매출 1~10위에 한하여 제작 지원

라. 기타지원(200개사 내외)

- (정보제공) 베트남 현지트렌트 정보 및 시장조사, 상품 시장테스트 등
- (물류) 물류관련 컨설팅 및 원스탑 물류서비스(풀필먼트, 3PL 등) 제공
- (기타) B2B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매칭 및 통역, 상품번역 등

3.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H/B*(헬스 및 뷰티)제품 제조 소공인

* 뷰티제품군 : 스킨케어, 마스크팩, 클렌징, 선케어, 메이크업, 미용소품, 더모코스메틱, 헤어케어, 바디케어, 향수 및 디퓨저, 네일제품류

** 헬스&푸드군 : 건강식품(비타민, 영양제 등), 푸드(이너뷰티/식단관리 등), 구강용품

나.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24.7.1.)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상시모집(24. 7. 1.~)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1단계) <u>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u> → <u>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u>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모집공고”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모집공고”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등 시스템 문의사항 1644-5302

다.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행처
공통서류	1	<서식1> 사업신청서	공고 內 서식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3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4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첨부파일 업로드
주업종 확인서류	2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단, 공고일(5.7)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공고 內 서식확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3개 中 택 1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	
	3개 中 택 1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다음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소상공인 신청서류 및 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 ※ 기존 소상공인마당 회원인 경우라도 주 대표자 명의로 아니라면 신규 회원가입 필수
-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 ①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5.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사업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모집공고 및 신청 (신청자→공단)	선정평가(서면평가) (공단)	선정 통보 (공단↔신청자)
7월 초	매월 말	매월 초

- 선정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항목에 따라 매달 말일 외부평가위원의 서면평가 진행(단, 필요에 따라 평가일정 변동가능)
 -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통보 : 평가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후 결과 통보
 - * 선정이후 결격사유 등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 ** 단, 70점 미만 득점시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처리

나. 평가항목

○ (서면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서 면 평 가	추진역량	■ 사업이해도 및 해외진출경험 등	30
	추진계획	■ 수행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의지 등	20
	제품역량	■ 제품경쟁력, 베트남 內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40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10
총 점			100

6. 추진절차(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모집공고 (공단)	사업신청접수 (공단)	평가 및 선정 (수출전문가)	온라인기획전 입점 및 콘텐츠 제작 (수행업체)	해외 오프라인매장 입점 (수행업체)
7월 초	7월~12월	매월 말	7월~12월	8~12월 중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 문의처

가.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신청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 1644-5302
사업문의	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전문기관	☎ 02-415-1026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8. 유의사항

- 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약속서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 다.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서 식】 사업신청서

- 【붙 임】 1.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 기준**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